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9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0년 12월 23일
발 의 자 : 김용연 의원(1명)
찬 성 자 : 권순선, 김상진, 김생환,
김수규, 문영민, 양민규,
이동현, 이호대, 전병주,
최기찬, 황인구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발주자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서 ‘석면해체·제거’로 사용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띄어쓰기를 수정함(안 제7조)
- 나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석면안전관리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석면 해체·제거 공사 일정)”을“(석면해체·제거 공사 일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석면 해체·제거”를 “석면해체·제거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) ① 석면해체·제거작업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,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석면 해체·제거 공사 일정)</p> <p>① 학교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<u>석면 해체·제거 공사</u>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일정 등을 담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석면해체·제거 공사 일정)</p> <p>① ----- ----- <u>석면해체·제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조의2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관리인 지정)</u> ① <u>석면해체·제거작업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석면해체·제거작업관리인의 지정기준,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.</u></p>